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432

제출연월일 : 2009. 1.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8. 10. 10. ~ 10. 3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과학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대덕특구과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대덕특구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2008.6.5 법률 제9106호]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국토해양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08.9.3 대통령령 제20988호]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월 20일

3.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 2. 10)상정, 심사,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1.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연정수)

○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규정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내지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내지 제12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복잡한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원센터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장을 “대덕특구과장”에서 “경제과학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 담당자도 “6급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센터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전문위원 위촉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 사업시행자가 어려움 없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2

제안연월일 : 2009. 2. 10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의 장과 구성원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조문 중 “대덕특구과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6급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대덕특구과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6급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②지원센터의 장은 대덕특구과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 경제과학국장 ---------- ---------- ---------- ----------사무관 ---------